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서식] <개정 2019. 10. 14.> (앞 쪽)

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

처리기간
15 일

신 청 인	성 명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업 체 명		전화번호	
	주소 또는 소재지			

신 청 내 용			
사업명칭		사업 위치	
시행면적	㎡	사업 진도	
신청면적	㎡	사용 목적	

토지이용 현황 (㎡)	용 도 별							
	면 적							
기반시설계획	시 설 별							
	개 요							

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61조제5항 단서,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
특별시장·광역시장·
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
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	수수료 없 음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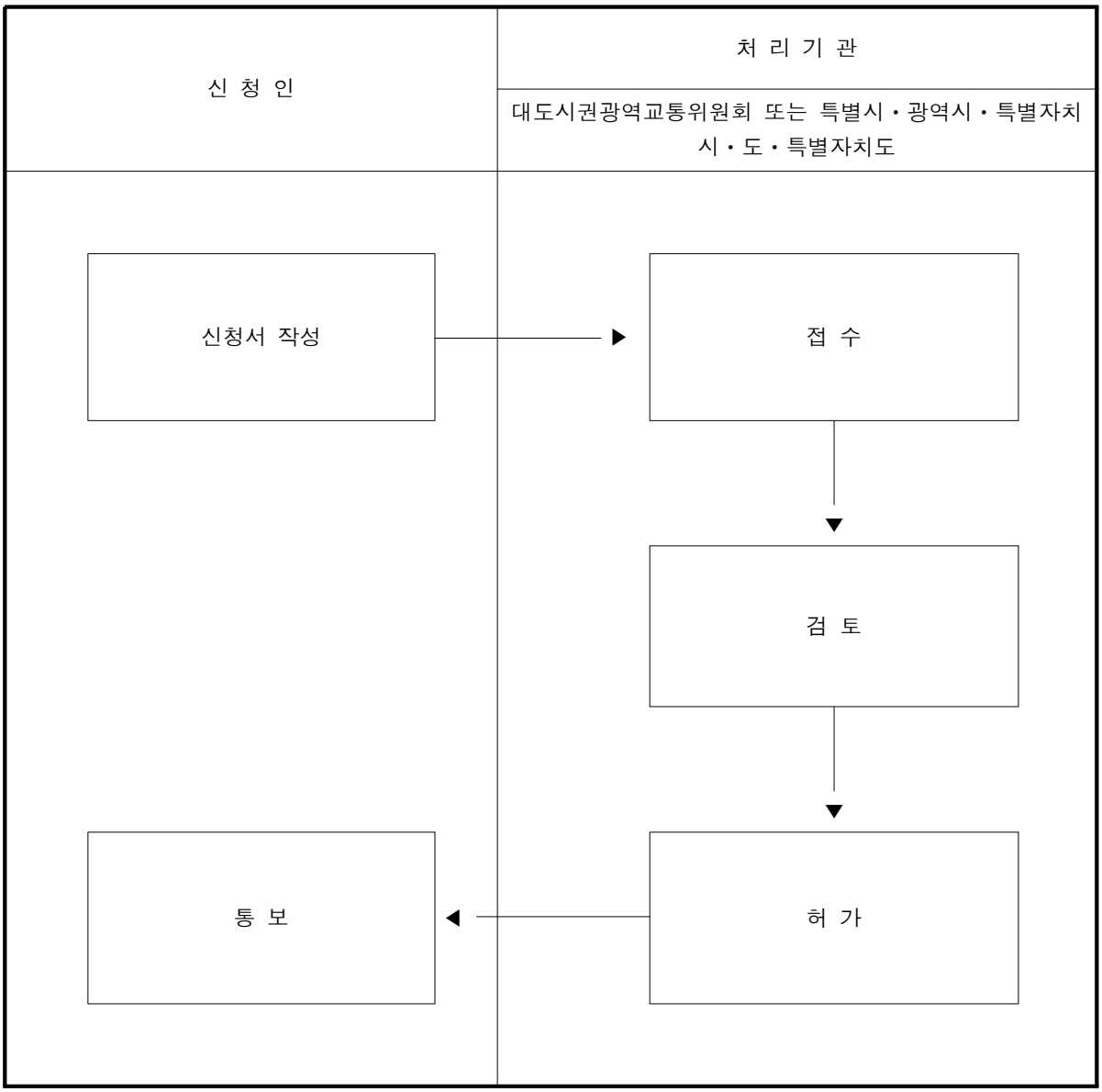
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 (뒤 쪽)